

종 합 토 론

사 회 : 이 승 선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종합토론

이승선(사회자)

지금부터는 토론자들이 제기한 쟁점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 중에 2명은 증액배상 혹은 이른바 ‘징벌배상’이라고 명명되고 있는 3배배상청구제도의 도입에 소극론 내지 반대론을 펼치셨고 나머지 2명은 찬성론을 피력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먼저, 김준현 본부장께서 제기한 쟁점, 즉 상법 개정안의 문제와 미등록 언론사 또한 언론관계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규호 교수님과 김동훈 회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규호(발제자)

현재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상법 개정안은 국익 측면에서도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현재의 언론환경 속에서는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라는 것이 국가 간 경계를 넘어 외국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미국 법원에서 우리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은 우리 언론법 체계 안에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없었던 관계로 ‘공서양속’에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내려진 외국 법원의 판결 집행을 우리 법원이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게 되면 막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한편, 상법 개정안에서는 증액배상을 5배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언론중재법과의 관계 속에서 상법을 일반법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특별법으로 볼 것이냐 논란이 될 수 있는데 만일 상법을 일반법으로 본다면 3배 증액을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과 체계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동훈(지정토론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사회적으로 논의되게 된 배경에는 레거시 미디어보다는 ‘유튜버’로 대표되는 미등록 언론사의 가짜뉴스 문제가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 역시 기존 미디어 때문이 아니었다고들 말합니다. 문제는 유튜버들의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법안들이 발의되었다손 치더라도 일단 법이 시행되게 되면 선의의 피해자, 즉 건전한 취재·보도를 하는 언론사들 역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 관련 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유튜버로 대표되는 미등록 언론사들의 문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승선(사회자)

미등록 언론사에 언론중재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양재규 연구팀장께서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양재규(지정토론자)

언론중재법을 적용할 수 있으려면 우선, 해당 매체가 ‘언론’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튜버와 같은 1인 미디어는 실질적으로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현행 신문법이나 방송법상 인터넷신문 내지 방송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향후 관련 법 개정에는 관한 논의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김동훈(지정토론자)

방송, 신문을 비롯한 매체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언론중재법으로 미등록 언론사를 규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며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승선(사회자)

박재영 판사께서는 토론 시에 법안이 안고 있는 위헌성 및 체계정합성 문제로

인해 도입에 대한 적극론과 소극론 중 소극론의 논거가 우수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신 바 있습니다. 만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용 중에 김준현 변호사께서 지적하신 점들, 즉 성립요건은 보다 엄격하게 하되 원고의 입증 부담이 완화된다면 이때에도 여전히 소극론이 우수하다고 보시는지요?

박재영(지정토론자)

사건임을 전제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보도로 인해 발생한 재산적 손해를 증액시키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소송에서 보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 있음이 입증되지 못해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식품에 인체에 유해한 요소가 있다고 보도되는 순간, 해당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식품기업의 피해가 보도 때문인지, 상품에 경쟁력이 없어서인지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보도와 피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선(사회자)

양재규 연구팀장께서 제기한 질문에 관해 발제자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호(발제자)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용어는 가급적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발제문의 제목에서부터 ‘징벌배상’이라는 용어 대신 ‘증액배상’이라고 쓴 것입니다.

증액배상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로 증액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소송을 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 충분하고,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 비용’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자료 인용액이 워낙 낮다 보니 위자료청구소송을

함에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합니다. 현재 승소를 하더라도 변호사 선임비 전액이 충당되지 않고, 따라서 소송비용으로 충당되지 않은 나머지 변호사 선임비를 증액배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위자료청구소송 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이것만으로도 증액배상제도의 가치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정과 같은 ADR에서도 증액배상을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관건은 피신청인의 수용가능성입니다. 증액배상의 수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배심조정'을 고려해볼만 합니다. 일반인들이 배심원으로 조정에 참가하여 일반적인 시각에서 증액배상의 의견을 내놓는다면 피신청인으로서도 좀 더 쉽게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승선(사회자)

이제 토론회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 토론회의 주제인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이 어떤 맥락에서 시작되었으며 이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작용 혹은 부작용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논의가 시작된 지점 어디엔가는 현행 법과 제도가 치유하지 못하고 있는 아픔이나 피해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치유하지 못하고 있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와 그 구제방안에 대한 생산적인 논쟁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